

교육부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 (교육부장관)
연 월 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가 개정됨(‘23.4.18.)에 따라 하위 법령 정비 및 타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학원의 교습과정 중 “국제화” 분야를 원격으로 교습하고자 하는 외국인 강사로 외국에 체류 중인 경우는 서류 요건 및 검증기준 완화(안 제10조의2제1항)
- 나. 교습소 폐소 관련으로 현재 인용중인 「부가가치세법」 일부가 개정(‘20.12.22.) 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항 현행화(안 제14조제2항)
- 다. 교습소의 어린이통학차량에 보호자 미탑승시 행정처분 근거 마련(학원법 제17조제2항제7호)되어, 제18조에 교습소 관련 호 추가(안 제1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 : 합의 예정
-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7. . ~ 8.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협의 예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호 중 “정부 또는 자국 소재”를 “정부나 국내 자국 공관 또는 해외 주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한다”를 “하며, 외국에서 체류중이고 원격으로 교습하고자 하는 외국인 강사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출신대학교에서 발급한”을 “소속 또는 출신대학교에서 발급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증명되는 서류,”로, “정부 또는 자국 소재”를 “정부나 국내 자국 공관 또는 해외 주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단서 중 “한다”를 “하며, 시행령 제3조3제1항의 별표 2에 따른 학원의 교습과정 중 “국제화” 분야를 원격으로 교습하고자 하는 외국인 강사 중 외국에 체류 중인 경우는 학력증명서로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제18조 중 “법 제17조제1항제11호”를 “법 제17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① 학원설립·운영자가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 영 제12조의2에 따라 검증하여야 할 서류의 요건 및 검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① ----- ----- ----- ----- -----.
1. 범죄경력조회서: 외국인강사의 자국 정부가 해당 외국인강사의 자국 전(全) 지역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발급한 것으로서, 자국 <u>정부 또는 자국 소재</u> 대한민국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강사의 자질과 관련된 범죄경력이 없어야 한다.	1. ----- ----- ----- ----- ----- <u>정부나 국내 자국 공관 또는 해외 주재</u> ----- ----- ----- -----.
2. 건강진단서: 교육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발급한 채용신체검사서로서 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마약 및 약물 검사 결과 양성반응을 보이거나	2. ----- ----- ----- ----- ----- ----- ----- -----

공중보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
정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
다. 다만, 채용하려는 외국인
강사가 외국에 체류 중이고
외국어교습에 필요한 사증(査
證)을 신청 중인 경우에는 입
국한 후 강의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받아 검증하여야 한
다.

3. 학력증명서: 출신대학교에서
발급한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
증명서, 학위 취득 사실이 기
재된 졸업증명서 중 한 가지
서류에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
인을 받아야 한다.

4. 여권, 사증, 외국인등록증: 여권은 유효하여야 하고, 사증과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외국인등록증을 갈음할 수 있다)의 체류자격은 외국어 회화지도활동이 허용

하
며, 외국에서 체류중이고 원격
으로 교습하고자 하는 외국인
강사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 소속 또는 출신대
학교에서 발급한 전문대학 졸
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
상의 학력이 증명되는 서류, -
----- 정부나 국내 자국
공관 또는 해외 주재 -----
-----.

4. -----

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채용하려는 외국인강사가 외국에 체류 중이고 외국어교습에 필요한 사증을 신청 중인 경우에는 입국한 후 강의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받아 검증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4조(교습소의 폐소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휴소 또는 폐소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장에게 제1항에 따른 휴소·폐소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휴업(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제출받

-----.

----- 하며, 시행령 제3조3제1항의 별표 2에 따른 학원의 교습과정 중 “국제화” 분야를 원격으로 교습하고자 하는 외국인 강사 중 외국에 체류 중인 경우는 학력증명서로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교습소의 폐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

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8조(학원의 등록말소 등) 법제17조제1항제11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란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학원의 등록말소 등) 법제17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제2항제7호-----

-----.

〈 의안 소관 부서명 〉

평생학습지원과	
연 락 처	044-203-6386